

의안번호	2214784
의 퇴 인	문금주 의원
회 답 일	2025. 12. 8.
추계번호	25G6591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－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

농·어업 분야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기한 적용기한 4년 연장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 농·어업 분야에 대한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4년 연장함에 따라 재정수입은 2026년 2조 8,748억원, 2030년 6,749억원 등 5년간 총 14조 1,306억원(연평균 2조 8,261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-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(안 제99조의4)의 경우 합리적인 추계가 곤란하여, 동 추계에서는 제외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소득세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누적	연평균 ¹⁾
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4년 연장(안 제69조의2)	-102	-102	-102	-102	-	-207	-102
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적용기한 4년 연장(안 제71조)	-630	-630	-630	-630	-	-2,520	-630
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4년 연장(안 제72조)	-	-2,861	-2,929	-2,998	-3,068	-11,856	-2,964
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4년 연장(안 제87조의2)	-33	-33	-34	-35	-	-135	-34
조합 출자금 비과세 4년 연장(안 제88조의5)	-219	-394	-394	-394	-175	-1,576	-315
조합 예탁금 저율과세 연장(안 제89조의3)	-3,595	-6,472	-6,472	-6,472	-2,876	-25,887	-5,177
농·축산·임업용 및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4년 연장(안 제105조제1항제5호 및 제6호)	-24,141	-25,137	-26,175	-27,256	-	-99,014	-24,754
농어민 직수입 기자재 부가가치세 면제 4년 연장(안 제106조제2항제9호)	-28	-28	-28	-28	-	-111	-28
합 계	-28,748	-35,657	-36,764	-37,915	-6,119	-141,306	-28,261

주: 1) 항목별 연평균은 세수효과가 발생한 연도만 고려해 계산한 값임

Ⅱ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69조의2 (축사용지에 대한 양도 소득세의 감면)	○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 4년 연장 － 적용기한: (현행) 2025.12.31. → (개정안) 2029.12.31.	
2	안 제71조 (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)	○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적용기 한 4년 연장 － 적용기한: (현행) 2025.12.31. → (개정안) 2029.12.31.	
3	안 제72조 (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 세 과세특례)	○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4년 연장 － 적용기한: (현행) 2025.12.31. → (개정안) 2029.12.31.	
4	안 제87조의2 (농어가목돈마련저축 에 대한 비과세)	○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적용기한 4년 연장 － 적용기한: (현행) 2025.12.31. → (개정안) 2029.12.31.	
5	안 제88조의5 (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)	○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 4년 연장 － 적용기한: (현행) 2025.12.31. → (개정안) 2029.12.31.	
6	안 제89조의3 (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)	○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적용기한 4년 연장 － 적용기한: (현행) 2025.12.31. → (개정안) 2029.12.31.	
7	안 제99조의4 (농어촌 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)	○ 농어촌주택 및 고향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 적용기한 4년 연장 － 적용기한: (현행) 2025.12.31. → (개정안) 2029.12.31.	
8	안 제105조 제1항제5호 및 제6호 (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)	○ 농·축산·임·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기한 연장 － 적용기한: (현행) 2025.12.31. → (개정안) 2029.12.31.	
9	안 제106조 제2항제9호 (부가가치세의 면제 등)	○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가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· 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와 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어 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 연장 － 적용기한: (현행) 2025.12.31. → (개정안) 2029.12.31.	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69조의2 (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)	○	
2	안 제71조 (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)	○	
3	안 제72조 (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)	○	
4	안 제87조의2 (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)	○	
5	안 제88조의5 (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)	○	
6	안 제89조의3 (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)	○	
7	안 제99조의4 (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)	×	향후 기존주택을 양도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양도소득세 액을 예측하기 어렵고, 과거의 감면실적이 부재하여 추계 곤란
8	안 제105조 제1항제5호 및 제6호 (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)	○	
9	안 제106조 제2항제9호 (부가가치세의 면제 등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가.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

- 부칙에 따라 개정안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, 부동산 양도일이 포함된 연도에 양도소득세 감면의 효과가 모두 발생한다고 가정
-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개정안의 세수 효과는 「조세지출예산서」 상 최근 감면실적을 활용하여 추계
 - 최근 조세지출 실적이 불규칙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므로, 2023~2025년 감면실적 평균 수준에서 향후 감면액이 발생할 것으로 가정

나.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

- 개정안이 부칙에 따라 2026년 귀속분부터 적용된다고 가정하며, 세수효과는 징수기준에 따라 발생

- 증여세의 경우, 연도별 증여행위의 감면은 해당연도에 모두 발생한다고 가정하여 세수효과는 2026년부터 발생
-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다음의 가정을 적용하여 추계
 - 향후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액은 최근 5년간 연평균 수준으로 발생한다고 가정
 - － 동 세액공제의 최근 5년간 공제실적은 2020년 536억원에서 2021년 773억원으로 증가하였다가 2024년 476억원으로 감소하는 등 증감추이가 일정하지 않음

다.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

- 개정안이 부칙에 따라 2026년 귀속분부터 적용된다고 가정하며, 세수효과는 징수기준에 따라 발생
 - 법인세의 경우, 2026년 귀속소득에 대한 신고는 2027년에 이루어짐에 따라 세수효과는 2027년부터 발생
-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
-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다음의 가정을 통해 추계
 - 향후 과표구간별 조합법인의 분포는 2024년 신고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가정
 - － 조합법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조합법인 과세특례를 적용한 경우와 일반법인의 법인세율 체계를 적용한 경우의 산출세액 차이를 기준으로 산출
 - － 조세지출예산서상 실적을 추계에 활용하되, 2024년 이전 감면실적은 2022년 세법개정에 따른 일반법인의 세율 인하를 반영해 조정한 후 활용
 - 조합법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최근 5년간의 감면 실적의 증가추세가 유지된다고 가정
 - － 조정된 과세특례의 실적을 바탕으로 최근 5년('20~'24년)간의 실적 증가 추세가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

라.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

- 개정안은 부칙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하여 2026년 1월 1일 이후 가입분부터 적용하는 것을 전제
-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일몰 적용기한 연장의 경우, 2025년의 동 저축 규모를 바탕으로 향후 금리에 대한 전망을 반영하여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세수효과 추계
 -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향후 규모를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동 저축의 2025년 규모가 향후에도 유지되는 것으로 전제하고 이후 금리 전망을 반영하여 관련 세수효과 추계
 - 현행 일몰기한은 2025년까지이므로 일몰기한 4년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설정

마.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

- 개정안은 부칙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하여 2026년 1월 1일 이후 가입분부터 적용하는 것을 전제
-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관련 조세지출의 최근 실적규모를 바탕으로 하여 2026년부터 2031년까지의 세수효과 추계
 - 조합 등 출자금 및 예탁금의 향후 규모를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련 조세지출의 최근(2025년) 수준이 향후에도 유지되는 것으로 전제
 - 개정안에 따른 비과세 및 저율과세 적용기간 변화로 인해 현행 대비 적용 세율의 변화가 발생하는 기간(2026~2030년)에 대하여 세수효과 추계

바.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

- 개정안은 부칙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하여 2026년 1월 1일 이후 가입분부터 적용하는 것을 전제
-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일몰 관련 조세지출의 최근 실적규모를 바탕으로 하여 2026년부터 2031년까지의 세수효과 추계
 - 조합 등 출자금 및 예탁금의 향후 규모를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련

조세지출의 최근(2025년) 수준이 향후에도 유지되는 것으로 전제

- 개정안에 따른 비과세 및 저율과세 적용기간 변화로 인해 현행 대비 적용세율의 변화가 발생하는 기간(2026~2030년)에 대하여 세수효과 추계

사. 농·축산·임업용 및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

- 개정안의 부칙에 따라 세수효과가 2026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
- 전체 조세지출액에서 농·축산·임업용 기자재 실적 및 어업용 기자재 실적을 구분하고, 각각의 최근(2019~2023년) 추세를 반영해 향후 조세지출액을 추정
 - 영세율에 따른 조세지출액(징수 기준)은 농·축산·임업용 및 어업용 기자재분이 모두 포함된 자료로, 세부 항목을 각각 구분할 수 없음
 - 영세율 대상으로 신고된 공급가액 자료(신고 기준)는 최종 조세지출액을 나타내는 자료는 아니나, 농·축산·임업용 및 어업용 기자재 분을 구분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활용해 조세지출액에 반영함

아. 농어민 직수입 기자재 부가가치세 면제

- 개정안의 부칙에 따라 세수효과가 2026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
- 최근 조세지출액의 추세를 반영하여 추계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

(1) 제도 개요 및 감면실적

- (제도개요) 동 감면은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 및 부수 토지(이하 '축사용지')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,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해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%를 감면하는 제도임

- (감면실적)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최근 실적은 다음과 같음
 - 동 제도의 최근 연도별 감면 실적은 불규칙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음

[표 2]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실적: 2021~2025년

(단위: 억원)

	2021	2022	2023	2024	2025p	'23~'25년 연평균
감면실적	191	85	114	124	67	102

주: p는 잠정치임

자료: 정부, 「조세지출예산서」, 각연도

(2) 추계 방법

- 「조세지출예산서」 상 2023~2025년 감면실적 평균(102억원) 수준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
 - 연도별로 감면실적이 불규칙하게 증감을 보이고 있으므로, 최근 실적의 평균치를 활용하여 추계

(3) 추계결과

-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4년 연장함에 따라 소득세는 2026년 102억원, 2029년 102억원 등 4년간 총 407억원(연평균 102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3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소득세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2029	누적	연평균
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 4년 연장(안 제69조의2)	-102	-102	-102	-102	-407	-102

나.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

(1) 제도 개요 및 실적

□ (제도개요) 동 제도는 영농자녀등이 농지를 조기 이전하는 유인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규모 이하의 농지·초지·산림지 등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를 면제하는 제도

○ 동 제도의 증여인 및 수증인, 감면대상 자산, 감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음

[표 4]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(안 제71조)의 주요 내용

		감면요건
감면 요건	증여인	-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·군·구, 그와 연결한 시·군·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km이내에 거주 - 농지등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 등에 종사
	수증인	-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 - 증여받은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
	대상 자산	- 농지: 「농지법」 상 농지로 4만㎡ 이내의 것 - 초지: 「초지법」 상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지로 148,500㎡ 이내의 것 - 산림지: 「산지관리법」 상 보전산지 중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거나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받아 새로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로서 29.7만㎡ 이내의 것, 조림기간이 20년 이상이 산림지의 경우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인 29.7만㎡ 이내의 산림지를 포함하여 99만㎡ 이내의 것 - 축사용지: 축사 및 축사에 따른 토지로서 해당 축사의 실제 건축면적을 「건축법」 상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 이내의 것 - 어선: 「어선법」 상 어선으로 총 톤수 20t 미만의 어선 - 어업권: 「수산업법」 또는 「내수면어업법」에 따른 어업권으로 10만㎡ 이내의 것 - 어업용 토지 등: 4만㎡ 이내의 것 - 염전: 「소금산업진흥법」에 따른 염전으로서 6만㎡ 이내의 것
	감면내용	증여세의 100%
누적 감면한도		5년간 1억원(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33조)
적용기한		(현행) 2025.12.31. → (개정안) 2028.12.31.

□ (감면실적) 최근 5년(2020~2024년)간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실적은 다음과 같음

○ 최근 5년간 감면실적을 살펴보면, 2020년 536억원에서 2021년 773억원으로 증가한 후, 2024년 476억원으로 감소하는 등 증감추이가 일정하지 않음

[표 5] 최근 5년간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실적 추이
(단위: 억원)

구 분	2020	2021	2022	2023	2024	누적	연평균 (‘20~’24년)
감면실적	536	773	712	654	476	3,151	630

자료: 정부, 「조세지출예산서」, 각 연도

(2) 추계방법

- 향후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는 최근 5년간 감면실적의 연평균 수준을 따른다고 가정하여 추계

- 최근 5년(2020~2024년)간 연평균 감면실적: 630억원

[표 6] 개정안에 따른 증여세수 감소효과 추정치: 2026~2030년
(단위: 억원)

구분	2026	2027	2028	2029	2030
세수효과	-630	-630	-630	-630	-630

(3) 추계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4년 연장하는 경우 증여세는 2026년 630억원, 2029년 630억원 등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간 총 2,520억 원(연평균 630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7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증여세, 2026~2029년
(단위: 억 원)

	2026	2027	2028	2029	누적	연평균
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적용기한 4년 연장(안 제 71조)	-630	-630	-630	-630	-2,520	-630

다.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

(1) 제도개요 및 조세지출 실적

□ (제도개요) 농업협동조합·수산업협동조합 등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산출시 일반법인과 달리 당기순이익 과세를 적용하여 세무조정을 간소화하고, 저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특례

- 일반법인과 달리 조합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산출시 당기순이익에서 기부금, 접대비 등 8가지 항목만을 손금불산입하고, 9~12%의 저율과세 적용

[표 8] 일반법인과 조합법인 과세체계 비교

		일반법인	조합법인
적용대상		일반법인	농업협동조합, 수산업협동조합, 신용협동조합, 새마을금고, 중소기업협동조합, 산림조합, 연연초생산협동조합, 소비자생활협동조합
과세표준		당기순이익 +익금산입 - 익금불산입 - 손금산입 +손금불산입 =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-이월결손금 - 비과세소득 - 소득공제 = 과세표준	당기순이익 +손금불산입(기부금 등 8개항목 ¹⁾) = 과세표준
과표 구간별 세율	2억원 이하	9% ²⁾	9%
	2~20억원	19% ²⁾	
	20~200억원		12%
	200~3,000억원	21% ²⁾	
	3,000억원 초과	24% ²⁾	

주: 1) 기부금, 접대비, 대손금, 대손충당금, 과다경비, 업무무관비용, 지급이자, 퇴직급여충당금을 포함

2) 2022년 세법개정 이전에는 각각 1%p씩 상향된 세율 적용

□ (특례실적) 조합법인 과세특례의 실적은 2020년 3,271억원 수준에서 2023년 5,113억원으로 증가한 후, 2025년(잠정) 2,731억원 수준으로 감소

- 2024년 실적 감소는 법인 실적의 부진 외에도 2022년 세법개정에 따른 일반법인의 세율 인하가 2023년 귀속소득부터 반영된 결과

[표 9] 최근 5년간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 실적 추이

(단위: 억원)

	2020	2021	2022	2023	2024	2025(잠정)
과세특례 실적	3,271	3,347	4,230	5,113	3,173	2,731

자료: 정부, 「조세지출예산서」, 각 연도

(2) 추계방법

- 개정안의 세수효과는 우선 2020~2023년간 조합법인 과세특례의 실적을 조정한 후, 2020~2024년간 조정실적의 증가추세를 반영하여 향후 세수 효과 추정

- 2024년 법인세 신고자료 기준 과표구간별 조합법인의 특례실적은 다음과 같음

[표 10] 조합법인의 과표구간별 과세표준, 세율 및 산출세액: 2024년 신고기준

과표구간별	법인수 (개)	과세표준 (억원)	과세특례 적용		과세특례 미적용		세수효과 (A-B)
			세율 (%)	산출세액 (A, 억원)	세율 ¹⁾ (%)	산출세액 (B, 억원)	
합 계	3,172	41,728	-	4,236	-	7,409	-3,173
2억원 이하	855	615	9	56	10	55	1
2~20억원	1,801	15,092		1,361	20	2,507	-1,147
20~200억원	511	24,745	12	2,669		4,599	-1,931
200~3,000억원	5	1,276		150	22	247	-97

자료: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2024년 과표구간별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일반법인의 세율인하에 따른 특례 실적을 조정
 - 2024년 자료를 바탕으로 법인세 과표구간별 1인당 과세표준을 통해 세법개정 전후의 일반법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특례 미적용시 산출세액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음

[표 11] 2022년 세법개정 효과에 따른 특례 미적용시 산출세액 조정내역: 2024년 신고기준

과표구간별	법인수 (A,개)	과세표준 (B,억원)	1인당 과세표준 (C=B/A, 억원)	특례 미적용시					
				'22년 세법개정 이전 기준			'22년 세법개정 이후 기준		
				세율 (D,%)	산출세액		세율 (D',%)	산출세액	
					1인당 (E=C ×D, 억원)	전체 (F=E ×B, 억원)		1인당 (E'=C ×D', 억원)	전체 (F'=E' ×B, 억원)
합 계	3,172	41,728	—	—	—	7,826	—	—	7,409
2억원 이하	855	615	0.7	10	0.07	62	9	0.06	55
2~20억원	1,801	15,092	8.4	20	1.5	2,658	19	1.4	2,507
20~200억원	511	24,745	48.4		9.5	4,847		9.0	4,599
200~3,000억원	5	1,276	255.2	22	51.9	260	21	49.4	247

자료: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이를 바탕으로 특례실적을 조정할 경우, 2024년 기준 11.6%의 실적이 하향 조정

[표 12] 조합법인 과세특례 실적 조정: 2024년 신고기준

(단위: 억원, %)

	특례적용시 산출세액(A)	특례 미적용시				실적조정을 ([C-E]/C)
		'22년 세법개정 이전 기준		'22년 세법개정 이후 기준		
		산출세액(B)	특례실적 (C=A-B)	산출세액(D)	특례실적 (E=A-D)	
산출세액	4,236	7,826	3,590	7,409	3,173	-11.6

자료: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2024년 기준으로 2020~2023년간 감면실적을 조정하면, 최근 5년간 특례실적은 연평균 2.4% 증가함

[표 13] 조합법인 과세특례의 실적 조정: 2020~2024년

(단위: 억원, %)

		2020	2021	2022	2023	2024	연평균 증가율 (‘20~’24년)
특례 실적	조정전(A)	3,271	3,347	4,230	5,113	3,173	—
	조정후 (A×[1-11.6%])	2,891	2,958	3,738	4,519	3,173 ¹⁾	2.4

주: 1) 2024년 실적은 세법개정이 적용된 2023년 귀속소득을 바탕으로 발생
자료: 정부, 「조세지출예산서」, 각 연도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추계

- 향후 세수효과는 2024년 실적에 최근 5년 연평균 감면실적의 증가율(2.4%)을 반영하여 추계

- 2025년 실적(잠정치)인 2,731억원에서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(2.4%)을 적용하여 세수효과 추계

[표 14] 조합법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 추정치

(단위: 억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
세수효과	-2,861	-2,929	-2,998	-3,068	-3,141

(3) 추계결과

-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4년 연장할 경우, 법인세는 2027년 2,861억원, 2030년 3,068억원 등 2027년에서 2030년까지 4년간 총 1조 1,856억원(연평균 2,964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

[표 15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2027~2030년, 법인세

(단위: 억원)

	2027	2028	2029	2030	누적	연평균
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4년 연장 (안 제72조)	-2,861	-2,929	-2,998	-3,068	-11,856	-2,964

라.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

(1) 조세지출 실적

-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관련 최근 조세지출실적은 2021년 35억원, 2024년 63억원 등으로 2024년까지 증가 추세를 보인 후, 2025년 42억원 수준으로 감소
 -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일정규모 이하의 농·임·어업 및 축산업 종사자가 연간 240만원 한도(만기 3년 또는 5년) 가입 시 약정이율과 저축장려금 지급

[표 16]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제도의 조세지출 실적: 2021~2025년

(단위: 억원, %)

	2021	2022	2023	2024	2025 ¹⁾
조세감면액	35	37	43	63	42
(증감률)	(△12.5)	(5.7)	(16.2)	(46.5)	(△33.3)

주: 1) 상반기 실적을 기반으로 한 정부 전망치

자료: 기획재정부, 각 연도 「조세지출예산서」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(2) 추계 방법

□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2025년 규모가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향후 금리에 대한 전망을 반영하여 조세지출액 전망

- 동 저축의 향후 규모를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2025년 저축 규모가 유지되는 것으로 전제하고 이후 금리 전망을 반영하여 관련 세수효과 추계
 - 현재 향후 수신금리에 대한 전망치가 부재하기 때문에 시장금리를 대표하는 국고채 3년물 이자율의 전년대비 증감률에 따라 2025년 이후 조세지출 실적이 감소할 것으로 가정하여 세수효과 추계
 - 국고채 3년물의 이자율은 「2026년 NABO 경제전망 2025~2029」(2025.9.)의 전망치 활용

[표 17] 연간 시장금리 최근 추이 및 향후 전망

(단위: %)

구 분	2023	2024	2025	2026	2027	2028	2029
국고채 3년물	3.6	3.1	2.4	2.4	2.5	2.6	2.6
(증감률)	-	(△130%)	(△226%)	(0.0%)	(4.2%)	(4.0%)	(0.0%)

자료: 2024년까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자료, 2025년부터는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

(3) 추계 결과

□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의 적용기한을 4년 연장함에 따라 재정수입 감소는 2026년 33억원 등 2026~2029년 5년간 총 135억원(연평균 34억원)으로 추계

[표 18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소득세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2029	합계	연평균
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연장 (안 제87조의2)	-33	-33	-34	-35	-135	-34

마.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

(1) 조세지출 실적

- 조합 등의 출자금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관련 조세지출 실적은 2025년 613억원 등 최근 5년간 증감추세 반복

[표 19] 조합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관련 조세지출 실적: 2021~2025년

(단위: 억원, %)

	2021	2022	2023	2024	2025 ¹⁾
조세감면액	491	611	868	594	613
(증감률)	(△0.2)	(24.4)	(42.1)	(△31.6)	(3.2)

주: 1) 상반기 실적 기반 전망치

자료: 기획재정부, 각 연도 「조세지출예산서」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(2) 추계 방법

- 조합 등 출자금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에 따른 향후 조세지출 규모는 최근(2025년) 수준을 기준으로 하여, 개정안에 따른 각 연도별 세율 변동폭을 감안하여 추계
 - 동 제도로 인한 조세지출 실적이 일정한 추세를 보이지 않고 변동적이므로 일몰연장 세수효과는 최근(2025년) 수준(613억원)을 기준으로 함
 - 2025년 전망치에 2025년 상반기 실적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추계에 반영
 - 현재 조세지출 실적은 배당소득세율 14% 수준을 기준으로 하므로, 개정안에 따른 각 연도별 세율 변동폭을 감안하여 추계
 - 일몰연장으로 인한 세율 변동폭은 2026년 5%p, 2027~2029년 9%p, 2030년 4%p이며, 동 차이 만큼 세수효과 발생
 - 개정안에 따르면 2026~2029년은 비과세이므로 세율 0%, 2030년은 5%, 2031년 이후는 9% 적용

[표 20]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연도별 배당소득세 세율

(단위: %, %p)

	2026	2027	2028	2029	2030	2031~
현행(A)	5	9	9	9	9	9
개정안(B)	0	0	0	0	5	9
소득세율 변동폭(B-A)	△5	△9	△9	△9	△4	0

- 2025년 배당소득세율이 14% 수준일 때 조세지출액이 613억원이므로, 세율 1%p 당 조세지출 실적으로 환산하면 44억원(=613억원/14%p)으로 볼 수 있음
 - 소득세법 제129조(원천징수세율)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해 100분의 14 세율 적용
- 따라서 상기 세율 1%p 당 조세지출 실적액에 각 연도별 세율 차이를 곱하여 세수효과 추정

(3) 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일몰 적용기한을 2025년 말에서 2029년말로 4년 연장할 경우, 재정수입 감소는 2026~2030년 5년간 총 1,576억원(연평균 315억원)으로 예상

[표 2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소득세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누적	연평균
조합 출자금 비과세 연장 (안 제88조의5)	-219	-394	-394	-394	-175	-1,576	-315

바.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

(1) 조세지출 실적

- 조합 등의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관련 조세지출 실적은 2025년 1조 67억원 등 최근 5년간 증가 추세

[표 22] 조합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관련 조세지출 실적: 2021~2025년

(단위: 억원, %)

	2021년	2022년	2023년	2024년	2025년 ¹⁾
조세감면액	3,269	3,113	6,226	9,765	10,067
(증감률)	(△25.2)	(△4.8)	(100.0)	(56.8)	(3.1)

주: 1) 상반기 실적 기반 전망치

자료: 기획재정부, 각 연도 「조세지출예산서」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(2) 추계 방법

□ 조합 등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저율과세에 따른 향후 조세지출 규모는 최근(2025년) 수준을 기준으로 하여, 개정안에 따른 각 연도별 세율 변동폭을 감안하여 추계

- 동 제도로 인한 조세지출 실적이 일정한 추세를 보이지 않고 변동적이므로 일몰연장 세수효과는 최근(2025년) 수준(1조 67억원)을 기준으로 함
 - 2025년 전망치에 2025년 상반기 실적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추계에 반영
- 현재 조세지출 실적은 이자소득세율 14% 수준을 기준으로 하므로, 개정안에 따른 각 연도별 세율 변동폭을 감안하여 추계
 - 일몰연장으로 인한 세율 변동폭은 2026년 5%p, 2027~2029년 9%p, 2030년 4%p이며, 동 차이 만큼 세수효과 발생
 - 개정안에 따르면 2026~2029년은 비과세이므로 세율 0%, 2030년은 5%, 2031년 이후는 9% 적용

[표 23]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연도별 이자소득세 세율

(단위: %, %p)

	2026	2027	2028	2029	2030	2031~
현행(A)	5	9	9	9	9	9
개정안(B)	0	0	0	0	5	9
소득세율 변동폭(B-A)	△5	△9	△9	△9	△4	0

- 2025년 이자소득세율이 14% 수준일 때 조세지출액이 1조67억원이므로, 세율 1%p 당 조세지출 실적으로 환산하면 719억원(=1조67억원/14%p)으로 볼 수 있음
 - 소득세법 제129조(원천징수세율)에 따라 이자소득에 대해 100분의 14 세율 적용

- 따라서 상기 세율 1%p 당 조세지출 실적액에 각 연도별 세율 차이를 곱하여 세수효과 추정

(3) 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일몰 적용기한을 2025년 말에서 2029년말로 4년 연장할 경우, 재정수입 감소는 2026~2030년 5년간 총 2조 5,887억원(연평균 5,177억원)으로 예상

[표 24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소득세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누적	연평균
조합 예탁금 저율과세 연장 (안 제89조의3)	-3,595	-6,472	-6,472	-6,472	-2,876	-25,887	-5,177

사. 농·축산·임업용 및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

(1) 제도 개요 및 실적

- 동 제도는 비료, 농약, 사료, 기계 등 농·축산·임·어업용 기자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내용
 - 적용대상은 비료¹⁾, 농약²⁾, 경운기·트랙터·콤바인 등 농업기계, 양돈케이지·사료저장탱크 등 축산기계, 약제주입기 등 임업용 기자재, 어망·선박용 기관 등 어업용 기자재, 목초액 등 유기농어업자재 허용물질³⁾ 등임
- 최근 농·축산·임업용 및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따른 전체 조세지출액은 2018년 1조 7,475억원, 2024년 2조 2,266억원 등으로 집계
 - 농·축산·임업용 기자재로부터 발생한 금액과 어업용 기자재로부터 발생한 금액이 모두 포함된 자료임

1) 「비료관리법」에 따른 비료

2) 「농약관리법」에 따르거나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된 농약

3) 「농·축산·임·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」 별표에 따른 농업기계, 축산기계, 어업용기자재, 유기농어업자재 허용물질임

[표 25] 농·축산·임업용 및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조세지출액: 2018~2024년
(단위: 억원)

	2018	2019	2020	2021	2022	2023	2024
조세지출액	17,475	18,770	17,763	18,481	21,886	23,047	22,266

주: 농·축산·임업용 기자재 영세율과 어업용 기자재 영세율에 따른 조세지출액이 모두 포함된 금액임
자료: 정부, 연도별 「조세지출예산서」

(2) 추계방법

- 영세율 대상으로 신고된 전체 기자재 공급가액을 기준으로, 최근 농·축산·임업용 기자재 분의 비율은 2024년의 경우 96.2%, 어업용 기자재 분의 비율은 3.8% 수준으로 집계

[표 26] 영세율 대상으로 신고된 기자재 공급가액 항목별 비율: 2018~2024년
(단위: %)

	2018	2019	2020	2021	2022	2023	2024
농·축산·임업용(제105조제1항제5호)	95.8	95.8	96.0	95.8	96.4	96.7	96.2
어업용(제105조제1항제6호)	4.2	4.2	4.0	4.2	3.6	3.3	3.8

주: 공급가액은 신고(귀속) 기준 금액이며, 최종적인 영세율 적용 대상 금액과는 차이가 있음
자료: 국세청 제공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영세율 대상인 기자재 공급가액 자료를 반영하여, 전체 조세지출액을 농·축산·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조세지출과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조세지출로 구분함
 - 매년 전체 조세지출액(농·축산·임업용 및 어업용)에 농·축산·임업용 기자재 공급가액 비율 및 어업용 기자재 공급가액 비율을 곱하여 추정

[표 27] 최근 농·축산·임업용 및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조세지출액(추정치): 2018~2024년
(단위: 억원)

	2018	2019	2020	2021	2022	2023	2024
농·축산·임업용 기자재	16,738	17,976	17,048	17,697	21,092	22,275	21,416
어업용 기자재	737	794	715	784	794	772	850

- 최근 추세를 반영하여, 농·축산·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시 조세지출액을 2026년 2조 3,250억원 등으로 추정
- 농·축산·임업용 기자재 조세지출액은 2018년 1조 6,738억원에서 2024년 2조 1,416억원으로 2018~2024년 7년간 연평균 4.2% 증가한 것으로 추정

[표 28] 최근 농·축산·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조세지출액(추정치): 2018~2024년

(단위: 억원, %)

	2018	2019	2020	2021	2022	2023	2024	연평균 증감률
농·축산·임업용 기자재 조세지출액	16,738	17,976	17,048	17,697	21,092	22,275	21,416	4.2

- 향후 추계기간 조세지출 규모는 최근 조세지출액의 증감률 추세(연평균 4.2%)와 동일한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

[표 29] 향후 농·축산·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조세지출액 추정: 2025~2029년

(단위: 억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
농·축산·임업용 기자재 영세율 연장 시 조세지출액	22,314	23,250	24,225	25,241	26,299

- 최근 추세를 반영하여,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기한 연장 시 조세지출액을 2026년 891억원 등으로 추정
- 어업용 기자재 조세지출액은 2018년 737억원에서 2024년 850억원으로 2018~2024년 7년간 연평균 2.4% 증가한 것으로 추정

[표 30] 최근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조세지출액(추정치): 2018~2024년

(단위: 억원, %)

	2018	2019	2020	2021	2022	2023	2024	연평균 증감률
어업용 기자재 조세지출액	737	794	715	784	794	772	850	2.4

- 향후 추계기간 조세지출 규모는 최근 조세지출액의 증감률 추세(연평균 2.4%)와 동일한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

[표 31] 향후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조세지출액 추정: 2025~2029년
(단위: 억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
어업용 기자재 영세율 연장 시 조세지출액	870	891	913	934	957

(3) 추계결과

- 농·축산·임업용 및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기한을 2025년 말에서 2029년 말까지 4년 연장할 경우 부가가치세수는 2026년 2조 4,141억원 등 2026~2029년 4년간 총 9조 9,014억원(연평균 2조 4,754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 - 2026~2029년 국세인 부가가치세(74.7%)는 총 7조 3,964억원, 지방소비세(25.3%)는 총 2조 5,051억원 감소 예상

[표 32] 농·축산·임업용 및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시 세수효과:
2026~2029년

	2026	2027	2028	2029	누적	연평균
농·축산·임업용 및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(안 제 105조제1항제5호 및 제6호)	-24,141	-25,137	-26,175	-27,256	-99,014	-24,754
- 국세(74.7%)	-18,033	-18,778	-19,553	-20,360	-73,964	-18,491
- 지방소비세(25.3%)	-6,108	-6,360	-6,622	-6,896	-25,051	-6,263

아. 농어민 직수입 기자재 부가가치세 면제

(1) 개요 및 실적

- 동 제도는 농민 등이 직접 수입하는 비료, 농약, 사료, 기계 등 농·축산·임·어업용 기자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하는 내용
- 동 제도에 따른 최근 조세지출액은 2020년 21억원, 2022년 46억원, 2025년(전망) 19억원 등으로 증감을 반복하는 추세로, 최근(2020~2025년)의 연평균 조세지출액은 28억원 수준

[표 33] 농어민 직수입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의 조세지출 실적:
2020~2025년(전망)

(단위: 억원)

	2020	2021	2022	2023	2024	2025(전망)	연평균
조세지출액	21	34	46	24	23	19	28

자료: 정부, 연도별 「조세지출예산서」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(2) 추계방법 및 결과

- 농민 등이 직접 수입하는 농·축산·임·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의 적용기한을 2025년 말에서 2029년 말까지 4년 연장할 경우 부가가치세수는 2026년 28억원 등 2026~2029년 4년간 총 111억원(연평균 28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 - 향후 추계기간 동안 최근(2020~2025년)의 연평균 조세지출액(28억원)과 동일한 수준으로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가정
 - 2026~2029년 4년 간 국세인 부가가치세(74.7%)는 총 83억원, 지방소비세(25.3%)는 총 28억원 감소 예상

[표 34] 농어민 직수입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기한 연장 시 세수효과: 2026~2029년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2029	누적	연평균
농어민 직수입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기한 연장(안 제106조제2항제9호)	-28	-28	-28	-28	-111	-28
- 국세(74.7%)	-21	-21	-21	-21	-83	-21
- 지방소비세(25.3%)	-7	-7	-7	-7	-28	-7

IV. 부대의견

□ 없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 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1과	김효경, 박성은, 이정훈	박연서
세제분석2과	박정환	백경엽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정훈	02-6788-4669	nororand@assembly.go.kr